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11. 15(금)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대희 상임위원 (1인)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대회 상임위원은 국회 예결위 소위 참석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은 총 2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3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4건이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5. 의결사항

가. 201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건 (2013-40-143)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201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2012년도에 실시한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개요는 평가 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는 총 155개 사업자 347개 방송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편PP 4사와 보도PP(뉴스Y), TV홈쇼핑(홈앤쇼핑) 채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전환 노력 항목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방송평가 절차는 방송평가지원단에서 방송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공표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한 방송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업자입니다. 지상파TV 중앙 3사는 올해 신설된 디지털 전환 노력 항목에 대한 평가가 양호하여 전년대비 모두 점수가 상승하였고, 순위는 KBS1, KBS2, SBS, MBC 순입니다. KBS1은 전년도와 비슷하고, KBS2는 평가점수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SBS는 심의제재 감소 등으로 점수가 상승하였고, MBC는 심의제재 감소, 어린이 교육정보 편성 증가 등으로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EBS는 디지털 전환 홍보노력 부족으로 점수가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0개 지역민방 중 TBC가 최고점을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JIBS, TJB 순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방송, 재난방송 편성실적과 방송기술 투자가 향상된 TBC와 TJB가 큰 폭으로 점수가 상승하였습니다. 대다수 지역민방의 평가점수가 전 영역에서 고루 상승한 반면, 시청자 의견반영, 장애인·여성고용 비율 등이 저조한 G1(강원방송)은 계속 평가점수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 SBS가 AM, FM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FM은 MBC, KBS1, KBS2 순이며, AM은 KBS1, MBC, KBS2 순이 되겠습니다. SBS의 FM은 자체심의 실적이 양호하고 재난방송 편성 증가로 점수가 상승하여 전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상파 DMB TV는 지상파를 주로 수증계하는 지상파계열 DMB의 경우 DMB용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저조로 비지상과 계열 DMB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DMB 중 한국 디엠비가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유원미디어의 경우 DMB용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향상되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비지상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MSO 중 현대HCN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엠비, 씨앤엠 순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SO가 2012년도 재송신 관련해서 KBS2TV 미송출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 방송법 위반과 디지털 전환을 저조 등으로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습니다.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법, 방송법 등 위반으로 인한 감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씨앤엠은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실적 증가 등 전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위성방송의 경우 스카이라이프는 장애인 시청지원 편성실적, 재무건전성 강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점수가 상승했으며, 3년 연속 상승 추세였습니다. 보도PP는 재난방송 편성,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의 적정성 평가에서 YTN이 좋은 점수를 받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종편PP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JTBC, MBN, TV조선, 채널A 순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편4사는 시청자불만처리 적정성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과 경영 비전, 조직관리 능력 등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사 모두 어린이방송 편성이 저조하였고, 심의규정 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홈쇼핑PP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대홈쇼핑이 최고점을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 CJ오쇼핑 순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의제재 감점이 많았던 우리홈쇼핑과 CJ오쇼핑이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시 평가결과가 일정비율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 내용이 이미 상임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이 났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 사무처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왜 발생했는지,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심의내용이 사전에 흘러나갔고 그리고 의결도 하지 않은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된다, 이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먼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전에 그런 결과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55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점수결과에 대해 체크하고 사업자 의견수렴하는 방법으로 2005년도부터 개별방송사에 평가결과를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종편이나 새로 시작하는 보도채널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그런 정책환경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 처리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과는 다르게 꼭 사업자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의견수렴 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면 종합점수는 안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채널끼리 서로가 확인 가능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편 PP 만점이 몇 점입니까?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700점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700점이 JTBC, MBN, TV조선, 채널A순인데 1등과 꼴찌 간 몇 점 차이입니까?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한 18점 차이 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18점 차이면 퍼센티지로 하면 2% 전후겠네요?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재미 다리만큼의 차이가 이렇게 홍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소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종전의 신문과 방송이 겸영 형태가 아니고 별도로 있었을 때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신문이 종편의 이름으로 겸영이 되고 또 종편시장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면서 이전투구(泥田鬪狗)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반성했고, 사무국과 개선점을 여러 가지 연구한 끝에 결국 사업자들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한 달 전에 두고 자료를 주는 것은 불가피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되, 꼭 필요한 이의제기 부분만 단편적으로 내보내면 종편4사간에 서로 비교해서 순위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일은 상당히 위원회로

서도 큰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저도 중간에 신문보도가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보고도 받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결정된 순위가 나왔나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김영관 국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과거에 이랬으니깐 그대로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그 자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한 가지 내용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비지상과 방송사업자 중에 씨앤엠이 꼴찌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씨앤엠이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고루 점수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앤엠이 굉장히 많은 사업소를 거느리고 있는 MSO 중에서도 상당히 큰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혹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씨앤엠은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점수가 고루 상승했다는 부분은 전년대비, 2년 연속 비교해 봤을 때 작년도에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고, 씨앤엠이 18개 계열사의 MSO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점수를 보면 재무건전성 부분에서 상당히 타사에 비해 낮게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채나 유동비율 측면에서 낮은 측면이 점수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데 씨앤엠의 재무건전성 문제 등 몇 가지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좋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내려간다면 방통위가 순위나 발표하고 말면 되겠느냐, 그런 분석에 대한 나름대로의 행정행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지금 SO에 대한 기본적인 재허가나 관리감독권은 미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평가 결과를 미래부에 보내면 미래부에서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재승인 때 점수로 반영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래부에 전달해서 미래부에서 재승인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게 협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몇 군데는 혹시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쪽 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개선하거나 바꿀 필요성은 못 느끼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평가와 관련된 규칙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결과가 나오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업자들이 이렇게 바뀌 달라, 저렇게 바뀌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제안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기준을 해마다 조금씩 바뀌 나갑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회에 방송평가규칙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바꾸어 나간다는 뜻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오늘 언론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방송기반국에서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해서 어제 KISDI에서 토론회 하는 것에 입장 준 적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없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어제 KISDI에 참여했는데 중간광고에 대해 일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들이 중간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은 것이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과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계속 해서 언론을 통해 튀어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소설처럼 튀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방송기반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동안 2건 터졌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필요하면 브리핑하고 그리고 반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이야기 안 한 것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한 것처럼 고정시켜 놓고 비판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중간광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미래부에 준 것도 없고, 진흥계획에 포함시킨 적도 없고, 분명히 로드맵만 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놓고 거기다가 비판을 갖다 붙이면 이것은 방송기반국에서 적극적으로 브리핑해서 반론하라는 것입니다. 반론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양문석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습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제가 논평을 하려고 했습니다. 방송 종합발전계획이 미래부, 방통위, 문화부 이렇게 해서 정부가 합의해서 무슨 안을 내놓은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각각 이야기했지만 종합으로 논의되어서 그 안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부가 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안을 어제 발표한 것이고, 그 내용을 각 부에서 나와서 의견수렴하는 토론회이고, 내용 자체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회 자체로 쓰였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방통위가 무슨 정책을 결정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 내용 자체에서도 종합계획(안)이다, 그것은 미래부에서 방송에 대한 안이지, 우리의 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 위원님, 이해하셨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예.

○ 이경재 위원장

- 제가 하나만 종편과 관련해서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부위원장님 이 기준이 종편 새로 만든 기준(안)에 의해서 심사한 것이 아니고, 그전의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이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이번에 새로 된 종편기준입니다. 이 적용률은 종전 지상파와 다르고 방송평가가 내년 1월에 될 종편 심사안에 새로 된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 기준...

○ 김충식 부위원장

- 이번에 한 것은 종편 출범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의한 최초의 방송평가이고...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종편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은 지상파와 별도로 만들어져서 이번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것은 '12년도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이번에 새로...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새로 종편에 적용될 기준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종합적인 내용에는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종편은 편성에 있어서 보도에 치우쳐 있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요약해서 보고 하더라도 중요성 있는 것을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13-40-144)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지원고시」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2012년 2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월 4일~24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의견입니다. KBS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영 라디오매체(경기FM, 경인FM)를 공영랩에서 민영랩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검토의견은 미디어랩 지원대상 중소방송사 재지정 문제가 방송사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으로 1년만에 재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제도 변경으로 특정 방송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방송광고 시장이 근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전체적인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지역·중소방송사의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먼저 미디어랩별 결합판매 평균비율입니다. 미디어랩 결합판매 평균비율은 '12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직전 회계연도 5년간('08년~'12년) 미디어랩의 결합판매 총매출액을 미디어랩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결합판매 평균 비율은 12.2964%, (주)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 평균 비율은 7.9598%로 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별 지원규모 비율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미디어랩의 총 지상파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지원대상 사업자별 지원규모 비율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별 구체적인 결합판매 지원규모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행시기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방송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비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역시 미디어랩법에 따른 중소방송사 지원 문제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 우리가 지원고시를 통해 1년 전에 확정해서 시행한지 겨우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흔들어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어서 현재로서 재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2년 정도의 광고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큰 틀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이 맞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시지요.

○ 이경재 위원장

- 한국방송공사 전체의 결합판매비율이 지난번에 비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미디어랩 결합판매 평균비율은 KOBACO와 미디어크리에이트 양사 모두 작년에 비해 늘었

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각 지원대상 사업자들의 결합판매 지원규모도 약간씩 늘었겠네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중소방송사가 많고, 중소방송사마다 개별적으로 계산할 때 조금 줄어드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대체로 보니까 조금씩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중요한 것은 변화를 보고해야지, 이렇게 숫자만 나열하면 그게 그것인 것 같으니까 보고할 때 요점이 뭔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관한 건 (2013-40-145)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법 제70조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익채널 심사결과입니다. 방송·경영·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이 평가한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안)입니다. 사회 복지 분야는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소상공인방송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과학진흥 분야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예술TV Arte, 그리고 교육 지원 분야는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English, EBS 플러스2 중학/직업 방송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는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심사항목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사업자 중에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복지 분야는 1위가 한국직업방송, 2위가 육아방송, 3위가 소상공인방송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에 법률TV, 한국청소년방송, JBS, 채널큐피드, 지방자치문화콘텐츠티브이, 한방건강TV는 총점 과락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과학·문화 진흥 분야는 1위가 아리랑TV, 2위 사이언스TV, 3위가 예술TV Arte였으며 National Geographic Channel 채널과 New 환경TV는 총점 과락 650점 미만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교육 지원 분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EBS 플러스1 수능전문이 1위, EBS English가 2위, EBS 플러스2 중학/직업 방송이 3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익채널 선정 관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채널의 경우 공익채널보다는 공공채널로 인정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3년 미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거실적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심사사항인 공적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중 재무건전성과 재정운영 계획의 심사배점을 높여서 공익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영여건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청사업자가 방송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전체사업 실적 중 방송사업 실적을 분리 제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한편 선정된 사업자가 공익채널의 취지에 맞게 안정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익채널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채널 자체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채널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심사에는 방송·법률·장애인 분야 등 전문가 8인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지TV가 인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인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습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심사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셨지만 신청사업자가 복지TV 단독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복지TV만이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할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입니다. 복지TV는 장애인에 특화된 전문편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계획, 신규 프로그램의 수급 계획 그리고 장애인에 특화된 시청자 불만처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할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지TV는 외부 보조금 활용내역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물 구입을 위한 차입금을 보유현금으로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장애인복지 방송을 위한 전문인력을 충원토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한편 심사항목 중 '제작 유형별 편성비율' 배점을 축소하고, '본방 프로그램 편성비율'이나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적 및 계획'의 배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공익채널 선정서와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대상 사업자의 내년도 분기별 운영계획서를 접수하고, 내년 이후 매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공익채널, 미래부가 공공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공익채널이라도 선정의 권한을 담당 협회로 이관하고 그 협회가 선정의 권한과 지원의 의무를 동시에 지게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학회의 각종 토론회에서 공공·공익채널을 왜 정부가 선정하느냐, 그리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딱히 그렇다고 크게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정에 거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제기가 계속 나왔고 오래된 화두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단 미래부와 협의해서 공익·공공채널을 각 협회로 선정 권한을 넘기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안 되면 공익채널부터 먼저 선정 권한을 넘기고 거기에 대해 협회로부터 지원계획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채널편성에 대한 자율권들을 상당 부분 이관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정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했을 경우 영세PP가 오히려 배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선정업무 자체가 주체를 법령에서 정부기관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변경해야만 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선정주체의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채널을 의결 하되, 민간에서 선정대상을 추천하면 우리가 그 추천을 받아서 심의·의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딱히 선정하는 것 자체가 지원이라면 할 말은 없겠는데, 선정한 이후에 공익채널이 말 그대로 법정신에 부합되는 공익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익채널 선정권을 정부에게 준 법정신인데, 현실적으로 선정 자체만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제도적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정권한을 사업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선정의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들을 우리가 받으면 실질적으로 채널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한편으로 보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법정신에 부합하는 공익채널의 그 역할들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간이 추천하고 우리가 의결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법을 바꾸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채널 부분의 개념이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선정한 채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기준은 판단주체에 따라 조금 다양해질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정부가 하는 경우와 민간 분야에서 하는 것은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협회로 갔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 문제가 공익채널에 기 선정된 업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정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지, 하고 나서 큰 도움이 된 것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공공채널, 공익채널을 나누는 것이 맞는지,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공익채널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선정을 우리가 과연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어떻게 제도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새로운 것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채널과 공익채널의 개념과 구체적인 선정의 기준이나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법체계로 보면 공공채널은 오히려 방통위가 하고, 공익채널은 오히려 미래부 쪽에서 하는게 합리적인데 이것이 거꾸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객관적인 기관에게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금 공공채널과 공익채널에 대해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은 아주 적절합니다. 제가 오면서부터 바로 문제제기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EBS나 아리랑TV는 상당부분 정부 또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아리랑TV가 공보처에서 만들어서 공공기관이고, 지금 운영도 문화부, 방통기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이것은 국내외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해 주는, 지금은 해외에서 보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공공채널도 아니고 공익채널에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제의해서 공익채널로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의 상업적인 채널의 일환으로 뒤서 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BS도 완전히 국민교육을 위한 국가의 서비스나 다름없는데 이것을 공익채널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공채널로 못 박아서 당연히 의무재송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채널이라는 것은 민간의 상업적인 방송이지만 그래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부가 채널사업자들의 정책권을 가지고 있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미래부의 권익을 우리가 뺏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익을 그쪽에 준다는 측면에서 부처 간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시정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와 (주)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3-40-146~148)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와 (주)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통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주요 경과입니다. 조사배경은 SKT, KT와 LGU+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을 인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경과는 금년 6월에 이동전화 해지지연·거부 관련 실태점검이 있었고, 7월 1일~7월 31일까지 사실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8월 1일~10월 18일까지 제출된 조사자료 현장 검증 및 분석, 10월 23일~11월 2일까지 시정조치(안)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작년 1월~금년 5월(17개월) 동안 이통 3사의 이동전화 해지 관련 상담내용 190여만 건을 대상으로 해지제한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4만 3,000여 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사별 상담 건수는 SK텔레콤이 96만여 건, KT가 54만여 건, LGU+가 42만여 건이었습니다. 해지 지연·거부 행위내용입니다. 이용자가 대리점, 고객센터 등에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일정기간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여 해지를 지연·거부한 사례가 SKT는 2만 7,000여 건, KT는 7,100여 건, LGU+는 6,100여 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방문한 대리점에서는 해지권한이 없다거나 해지업무는 개통대리점에서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3사 모두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이통 3사별 해지지연·거부 현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해지누락 행위입니다. 이통 3사가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는 SKT 626건, KT 596건, LGU+ 58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해지누락으로 부과된 요금은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에 소급하여 반환하였습니다. <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이통 3사의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무적인 사용기간을 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 대리점, 고객센터 등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통해 해지를 지연·거부하였고, 이용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지신청하였음에도 해지처리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통 3사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상기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①금지행위의 중지, ②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와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최대 8억원)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통3사의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징금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최대 8억원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먼저 기준과징금의 경우에 전체 위반율이 조사 건수 대비 2%로 매우 낮기 때문에 중대성 정도를 '약함'으로 보고, 각 사별 부과기준액을 '약함'에서 상한인 3억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필수적 가중입니다. 이통3사 모두 위반행위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필수적 가중 조항에 의해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 가중입니다. 다만, SKT에 대해서는 이통 3사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사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SKT가 65%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다시 30% 추가 가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건의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이통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은 SKT 5억 700만원, KT와 LGU+는 각각 3억 9,000만원으로 총 12억 8,7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현재 최대 8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지금 내용을 보면 4만 3,000건 정도의 위반행위를 17개월 동안 조사해서 4만 3,000건이면 하루에 100건 정도가 여전히 해지지않는 또는 거부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가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말씀하셨던 보고내용들 중에 예전에는 50% 정도 됐는데 지금은 2% 정도 되니까 아주 좋아졌다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정책적 의지가 관철됐다고 보는데, 여전히 하루에 1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과징금 최대치가 8억원이면 8억원에 가깝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어중간하게 3~4억원 해서 중대성이 약함으로 봐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 문제는 이용자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고, 이용자불편과 직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리점 가서 아주 불편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이쪽 가라, 저쪽 가라면서 돌림을 당하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했던 것이 이 조사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가 끝을 봐야 한다, 그러면 규제기관이 이용자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주면서 상징적 의미로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루에 100명이 아니라 1명도 발생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과징금 8억원 최대치로 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지제한 관련해서는 시장조사를 2005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의 이통사들 위반율이 51%였는데 현재 2% 정도라면 저희는 정말 많이 개선됐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조사건수 190여만 건 중 2%였는데 실제 동일한 17개월 중 이통 3사가 해지한 건은 680만 건인데 해지건수 대비하면 비율이 0.63%밖에 안 되는 점을 저희는 감안해서 약함 정도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제한 거부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벌할 필요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느바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릴 때 남아 있는 건에 대해서 이통 3사들의 조치계획이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을 통해 이런 일이 더욱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해지자연이나 거부행위가 이동통신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통에 대한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이 끊임없이 누적되어 있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대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뿌리가 뽑혔다, 이 자체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 주어야 다른 영역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의 결과로 인해 해지자연이나 거부행위가 없어졌다는 롤모델을 만들어내고 다른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근절해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최대치로 가자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관철된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고하게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이용자보호를 위한 최대치로 가는 것이 말 그대로 전 정부 영역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다른 유통 영역에 있어서도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지지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SKT가 특별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왜 그런지 이유까지는 제가...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이유가 조사 안 됐습니까? 제일 큰 사업체인데 현저하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사무국에서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

-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담내용을 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90만여 건인데 SKT가 96만여 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담건수 자체가 많았고, 그다음에 각사가 내부 프로세스를 가지고 상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SKT 부분은 타사에 비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현저하게 미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인데 작년 1월에 비해 지금은 현저하게 3사가 다 개선됐습니까?

○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

- 저희가 6월부터 조사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할 수 있습니까?

○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

- 다시 봐야겠습니다만….

○ 홍성규 상임위원

- 사실 이것이 2002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50%고 어찌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작년 1월쯤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조사도 하고 또 회사가 개선노력을 해서 최근에는 거의 없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

- 저희가 조사를 6월부터 했는데 그 뒤로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사라졌다는 것은 아까 양 위원님 말씀처럼 없다,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 이런 환경이 됐다고 보십니까?

○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 보장할 수 있습니까?

○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

- 저희 쪽에 소명자료도 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양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쪽 개선해서 현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 이런 일을 이제 안 한다, 이렇게까지 만약 개선이 됐다면 오늘 사무국에서 이야기한 정도로 가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도 작년 1월에 조사 시작한 그 시점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강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

- 그 시점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할 수 있습니까?

○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

- 그 부분은 따로 끝난 뒤에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는 저희가 이행실태 점검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예를 들어 SKT 수만 건, KT, LGU+ 수천 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는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0건 정도 된다면 하루에 10건 미만, 하루에 20건 미만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

- 그런 정도로 내려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 정도의 내용에 대해 깔끔하게 동의 한 번 안 해 주고 그것을 갖다가 굳이 상징적으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우리가 이런 조사가 나갔을 때 유의미한 위반건수가 없다면 오늘로 마지막 지난 10여년의 정책의지가 관철되고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종지부에 명확하게 '이후에도'라는 명확한 의지를 최대치로 가서 상징적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전가보도(傳家寶刀)로 마구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의 이야기이고, 사무국에서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는 없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상담건수 대비 비율을 조사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8억원과 5억 700만원 사이는 2억 9천 3백만원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게 되면 KT와 LGU+ 과징금 액수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일단 5억 7백만원을 할 것인지, 8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사무국과 상임위원 간에 판단을 더 맞추기로 하고, 일단 시정명령은 확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서면결의하시지요.
- 이경재 위원장
 -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SKT가 2만 7,391건이고, KT는 7,400여 건이고, LGU+는 6,100여 건입니다. 그러면 SKT가 KT의 거의 350% 정도 위반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과징금 기준을 보니까 기준금액이 3억원이고 필수가중은 30%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에서 30%가 가중되니까 3억원에서 9,000만원이 플러스되어서 3억 9,000만원이 됐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SKT는 거기에 추가 가중해서 30%를 하니까 5억 700만원이 됐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면 과거에 보조금 기준할 때 1%만 오버되어도 과열 주도사업자라고 지정되어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뒀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면 SKT가 30%만 가중처벌될 것이라면 5,000%를 해도 30%만 가중이 되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면 가중처벌입니까, 가중감면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 가중할 수 있는 율이 저희 규정에 30%만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 이경제 위원장

- 그 기준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어떤 측면에서는 제재로서 약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어떤 면이 아니라 통계학적·수학적으로 보면 가중이라고 하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액수는 일정하고, 위반건수는 수백 배가 되어도 30%만 더 매기면 무진장 위반해도 전혀 손해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손해가 아니라 아주 좋지요. 이런 기준도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30% 가산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룰을 정할 때는 해지거부 하나만을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통위 룰 안에서 30%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라는 것이 건수가 많아지고 액수가 클 때 30%는 그것도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50%, 60% 처벌해서 시장교란이라는 것이 근절되고 행정이 깨끗하게 되면 그렇게 간단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룰이 꼭 강별, 강경한 처벌만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실효성 여부는 둘째 치고 기준을 정할 때 이것은 정말 이상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철순 이용자보호과장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기준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심하게 가중해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가중이라고 놓고 30% 이상으로 3배, 4배, 5배로 위반을 해도 더 가중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고 실효성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이 시행령으로 고시되어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고시를 다시 개정해서 액수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소급입법이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소급입법이 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미 기준을 고시했기 때문에...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이것은 SKT에 대해 가중이 아니라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특혜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거꾸로 되어 가는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빨리 고쳤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벌내용에 대한 것은 서면결의하기로 하고, 시정명령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최저액수는 5억 7백만원으로 확정하고, 또 LGU+, KT를 최저 3억 9,000만원으로 확정하고 그 상한선을 8억으로 할 것인지 또 얼마나 할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하지요. 요컨대 Bottom Line은 정해진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지요. Bottom Line은 정해진 것이지요.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시정명령을 하되 액수와 관련된 것은 서면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Bottom Line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 9,000만원이나 3억 9,000만원으로 하면 맥시멈을 8억원으로 만들기는 여러 가지 가중사유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중대성 정도를 어디로 보느냐도 의결하지 않아야 8억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해 놓았으니까 그때 예를 들어 '중대'로 할 것이냐, '매우중대'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때 서면결의로 하면 됩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면의결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것이 5억 700만원, 3억 9,000만원이 아니라 이 정도선이 최소이고....

○ 홍성규 상임위원

- 최소한 그 정도로 간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플러스알파를 하니까 지금 중대성 약함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원래 기준금액의 중대성에 대한 세 단계를 그때 적용해서 최소 이것 이상 되어야 한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런 뜻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이 단위보다 8억원에 가까워야 한다, 이 정도....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폐회】